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9
------	------

2024. 4. 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이병윤 의원(찬성자 38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4.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병윤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Ⅲ. 검토의견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물가대책위원회에 교통요금 조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시민 의견 수렴의 실효성 및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담보하고자 발의된 것임.

나. 교통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의 작성 및 제출(안 제10조제1항)

- 동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교통요금 조정안 상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공청회·토론회(이하 “공청회 등”)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 ----- -----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먼저 동 위원회는 서울시 물가 안정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 ▶대시민 계도 등을 협의·조정하고, 서울시가 결정·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¹⁾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동 위원회는 총 30명 이내에서 서울시의원과 당연직 위원²⁾을 포함하여 물가 관련 시민단체와 소비자 대표, 대학교수, 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하고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최근 5년간 ▶물가 안정화 방안 자문, ▶택시요금 조정, ▶지하철, 버스 요금 조정을 위해 총 3회 개최되었음.

< 최근 5년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이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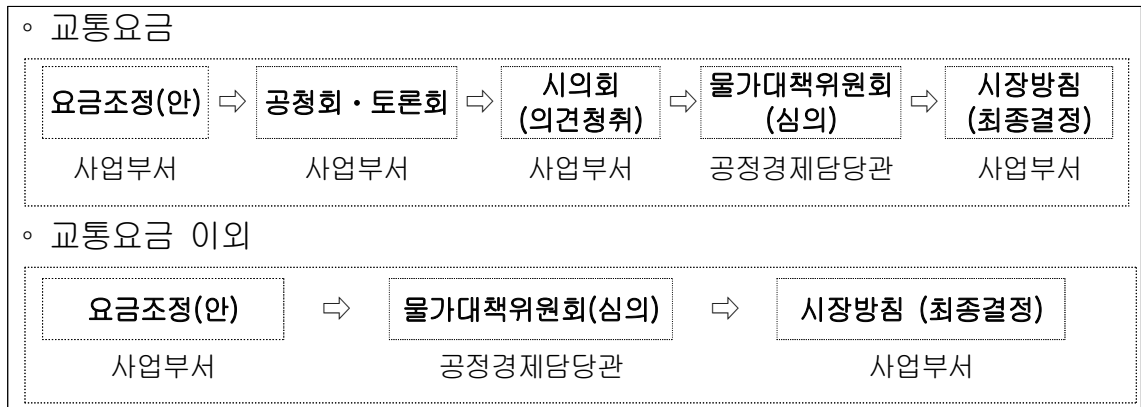
개 최 일	안 건 명	회 의 결 과
2022.5.9.~ 2022.5.13. (서면)	물가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추진 방향 및 대책 자문 - 市 차원의 물가안정화 방안 자문 등	-
2022.10.25. (대면)	택시 요금 조정	원안가결 (참석16명 중 13명 찬성)
2023.7.12. (대면)	지하철, 버스 요금 조정	원안 가결 (참석 17명 중 15명 찬성)

- 한편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상정되는 다른 요금과 달리, 교통요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요금이 시민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1) 교통요금(시내버스, 마을버스, 중형택시,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2)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 재무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정책기획관

< 물가대책위원회 요금 결정 체계 >



- 그러나 동 조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루어진 교통요금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후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의견청취안의 부실제출과 공청회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시의회의 균형있는 논의와 면밀한 심사를 저해하였음.

< 최근 교통요금 조정 의견청취 일정 >

연 번	안건명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공청회	시의회 상정
1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 8. 29	2022. 9. 5. 인원 : 약 300명	(교통위원회)2022. 9. 22. (본회의)2022. 9.28.
2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3. 2. 6.	2023. 2. 10 인원 : 약 300명	(교통위원회)2023. 3. 7. (본회의)2023. 3.10.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하여금 교통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내용이 반영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편법적인 공청회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통요금 조정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청회 등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시의회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운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병운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민석,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윤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8
명)

1. 제안이유

-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이에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견 수렴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서울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를 “후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제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u>후</u>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 ----- ----- ----- <u>후 요</u> <u>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 ·</u> <u>제출하여</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은 교통요금 등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요금조정계획안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정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